

전국의 지하철을 무임으로 편리하게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 지하철 무임, 버스 유임

문제점

교통복지카드 발급 지역 지하철에서만 무임승차

- 현재 6개 지자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에서만 교통복지카드 발급 가능, 그 외 지역 교통기능 선택 불가
- 발급 지자체(장애인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만 무임태그 승차 가능, 그 외 지역은 이용시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 발급해야 하는 불편*

*예컨대, 부산에서 발급받은 교통복지카드는 서울 지하철 무임태그 불가

개선사항

전국에서 호환되는
교통복지카드 발급

개선
전

교통수단별 각기 다른 카드 필요



* (예시) 부산 거주자의 경우, 서울로 이동 시

개선
후

교통기능이 있는 장애인복지카드 단 한 장



시행 내용

'23. 4. 1일 ~

- '23. 4. 1. 이후 신청하는 금융카드형*은 모두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로 발급됨

	대상	시행 일자	신청 가능 범위	신청 방법
기존	금융카드형 소유자 중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자 ※ 단, 서울/인천/충남지역에서 발급된 금융카드형의 경우, 재발급 필요 없음	23년 4월 1일부터 가능	본인 또는 대리 신청 가능	① 방문 ② 정부24 ③ 복지로 홈페이지 * 위 중 택 1 ※ 금융카드형 중 신용카드발급 경우, 「여성전문금융업법」 제14조 의거 만 19세 이상 발급가능
	신분증형 소유자 중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자	시도 별 신청시기 차등 ** 표 아래 참고	본인 직접 신청	※ 금융카드형 중 직불카드(체크카드) 형태의 경우, 만 14세 이상 가능
신규	최초 복지카드 발급자 중 금융카드형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자	23년 4월 1일부터 가능	본인 직접 신청	방문 ※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 신규 신청자의 경우, 주민등록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1) 23년 4월 1일부터 서울, 인천, 충남, 부산, 대구, 광주
3) 23년 6월 1일부터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남

2) 23년 5월 1일부터 울산, 세종, 전북, 경북, 제주
4) 23년 7월 1일부터 경기

※ 필수서류: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사진 등

* 단, 사진은 본인 동의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진단서 사진을 활용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없음

※ 대리신청범위: 법정대리인,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배우자, 형제자매,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신청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콜센터(☎129)로 문의주세요

